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1113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 양형근
	2. 서형태
검 사	송준구(기소), 안광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김유정
판 결 선 고	2014. 10. 2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0041104007-5EM3G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피고인 양형근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피고인 서형태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홈플러스테스코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및 박근혜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회원 등 약 40명과 함께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쌍용차사퇴 해결 의지 없는 새누리당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2012. 8. 9. 16:00경 위와 같이 집회를 진행하던 중,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유성호가 방송 차량을 이용하여 '그늘막은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방송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새누리당 당사 앞 도로에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유성호는 새누리당 당사 앞 도로까지 그늘막이 설치되는 경우 천막으로 인하여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고, 영등포구 도시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영업업무에 방해가 되며, 장기간 도로에서의 농성 등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2012. 8. 9. 16:10경 시위를 대비하여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22중대 소속 순경 박대혁, 순경 최수현 등 경찰관들에게 그늘막 설치를 제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박대혁, 최수현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그늘막 설치 행위를 제지하였다.

피고인 양형근은 위 박대혁 등 경찰관들이 그늘막 설치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박대혁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박대혁의 목과 좌측 상박부를 할퀴고, 피고인 서형태는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최수현의 멱살 및 왼쪽 어

깨 부분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최수현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질서유지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인바,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이나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강제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늘막 설치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그늘막 설치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그늘막 설치를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들에 대항하여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차웅 ______________________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등본입니다.

2014.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 형 아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